가스 가스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LPG 용기의 옥외보관, 차양막 설치, 전도방지, 보호 덮개 등의 가스 기구의 적절한 관리상태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가스레인지 및 가스 전열기 등 이와 유사한 것
-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
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출처: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

가스 가스시설 환기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설치된 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가 설치되어 고장 없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7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17조(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① 배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

1. 교육시설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되거나 노출되도록 시공할 것
2. 교육시설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설치하거나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할 것
3. 배관용 호스·중간밸브 등 연소기와의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할 것

②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③ 가스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른다.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3.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잘 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장애물이나 외부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 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팬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교육시설의 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7조

안전·위생 부착물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등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성 (3점)

심사 기준	배점	점수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합계		

〈용어정리〉
○ 누전차단기 : 전기기계기구가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3) 옥외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 물 사용 공간이 없거나,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심사
- 모든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각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설치된 장소의 개소 비율을 뜻함)

옥외의 전기간판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해당없음	-	

○ 건물 내·외부-부착물

평가항목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여부	코드	시설-16
평가방법 양호		○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되었거나 마감이 잘 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 ○ 연결부 등이 녹과 부식이 발생하는 등 일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면 **양호**	
주의	 	○ 연결부 등에 녹 또는 부식이 발생하거나 연결부 주위에 균열 등 들뜸이 있는 상태이면 **주의** ○ 광고 간판 등 부착물이 낙하 우려가 있으면 **주의**	
불량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4. 23.>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3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

가. 체력단련장(헬스장)

건 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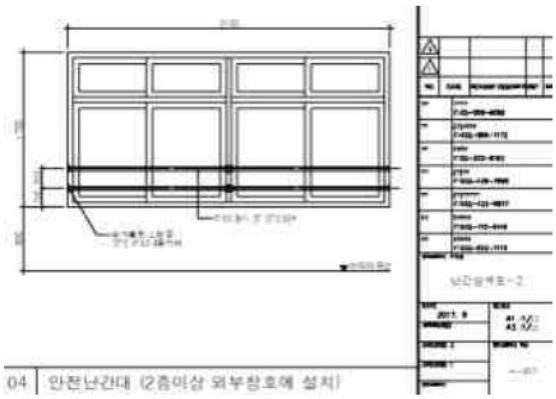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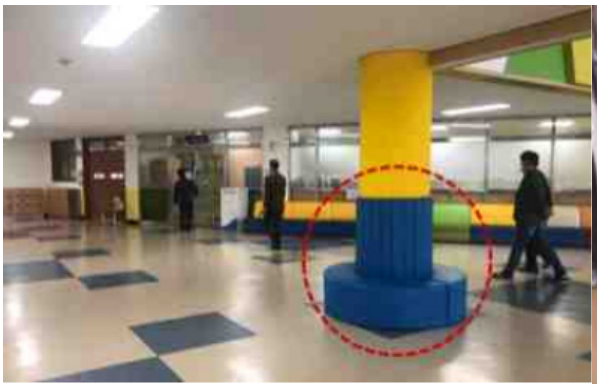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 축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건 축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자의 운동 방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 설치 여부 확인(트레드밀 후면 1m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ACSM's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Health/ Fitness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dequate clearance, in this instance, refers to the space to the side and behind each piece of continuous-motion exercise equipment located in the facility. Facilities need to position the equipment they offer in a way to help ensure that its usage does not compromise the safety of anyone adjacent to the equipment when it is in use. For example, a clearance space of at least 3.3 ft (1 m) and 1.6 ft (0.5 m), respectively, should be provided behind and to each side of a treadmill.

출처: ACSM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 16 – 체력단련장

평가항목		기구 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코드	체육 16-02
	기준	○ 트래드밀 : 후면에 1m 이상 확보한 상태 ○ 머신 류 : 기구를 사용할 때 통행자에게 접촉이 안 되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 ○ 프리웨이트 류 : 기구를 사용할 때 통행자에게 접촉이 안 되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		

카. 체력단련장업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8. 28.>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1명 이상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나. 체육도장(태권도 등)

건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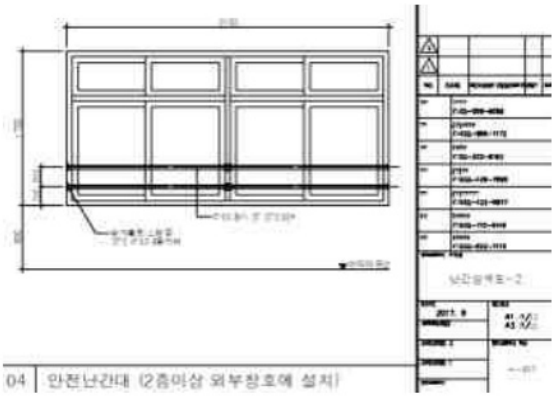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인)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WORLD
PARA TAEKWONDO

WORLD TAEKWONDO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In force as of May 2nd, 2023

Article 3:
Competition Area

3.1 The Competition Area is composed of a Contest Area and a Safety Area. The Contest Area and Safety Area shall have a flat surface without any obstructing projections, and be covered with a WT recognized mat elastic and non-slippery mat. The Contest Area may also be installed on a platform 60-100 cm high from the floor, if necessary. The Outer Line of the of the Safety Area shall be inclined at a gradient of less than 30 degrees, for the safety of the contestants.

출처: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건 축 수용인원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로 관리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차. 체육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8. 28.>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1명 이상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골프연습장

건 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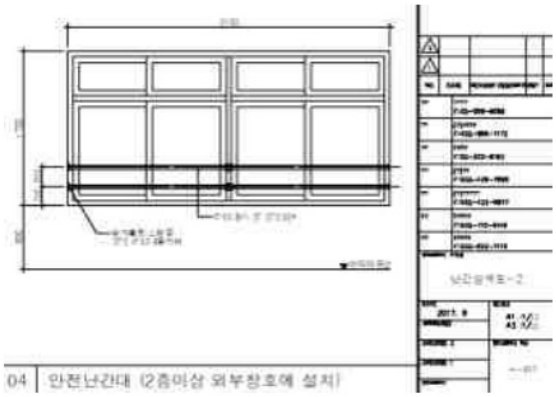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인)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축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보호망 등의 설치 및 유지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건 축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티(타점) 간 간격 2.5m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 통행로와 거리 1.5m 이상 확보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라.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건 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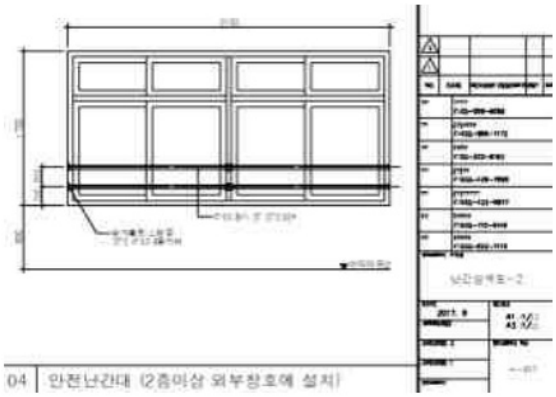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재료의 안전망 설치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축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보호망 등의 설치 및 유지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건 축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타석과 스크린까지의 거리 3m 이상, 타석과 천장과의 높이 2.8m,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 1.5m, 스크린과 뒤 벽면의 이격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대여용 장비의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파.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마. 체육교습(축구 등)

건 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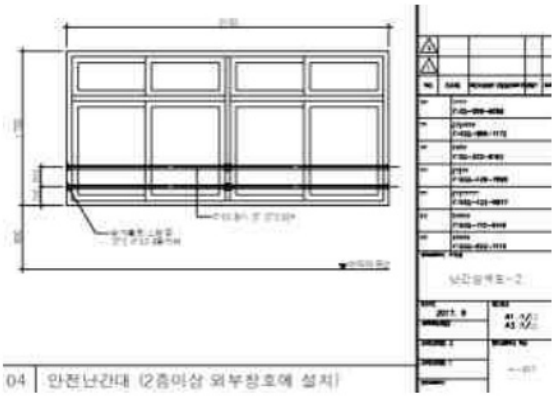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인)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축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물망·보호망 등의 설치 및 유지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규모별 적정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8. 28.>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1명 이상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바.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건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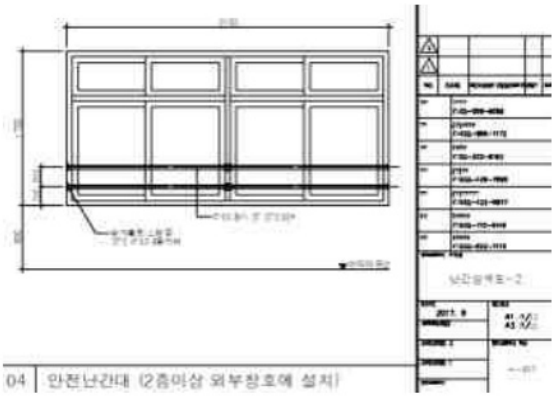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충격흡수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World Taekwondo, World para taekwondo Competition Rules, 〈Competition Area〉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축 체육활동시 충격흡수가 이루어 지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충격흡수재(높이 150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벽 충격흡수 재질, 바닥의 논슬립 재질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②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건 축 기구 간 안전거리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자의 운동 방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 설치 여부 확인(트레드밀 후면 1m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ACSM's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Health/ Fitness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dequate clearance, in this instance, refers to the space to the side and behind each piece of continuous-motion exercise equipment located in the facility. Facilities need to position the equipment they offer in a way to help ensure that its usage does not compromise the safety of anyone adjacent to the equipment when it is in use. For example, a clearance space of at least 3.3 ft (1 m) and 1.6 ft (0.5 m), respectively, should be provided behind and to each side of a treadmill.

출처: ACSM Health facility standards and guidelines

○ 16 - 체력단련장

평가항목		기구 간 안전거리 확보 여부	코드	체육 16-02
	기준	○ 트레드밀 : 후면에 1m 이상 확보한 상태 ○ 머신 류 : 기구를 사용할 때 통행자에게 접촉이 안 되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 ○ 프리웨이트 류 : 기구를 사용할 때 통행자에게 접촉이 안 되는 거리를 확보한 상태		

카. 체력단련장업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사. 체온관리실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재료의 안전망 설치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업종별 특성 안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고 있나요?	☐	☐	☐	
• 목욕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	☐	☐	
•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	☐	☐	
• 사우나실에 온도계와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였나요?	☐	☐	☐	
• 사우나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나요?	☐	☐	☐	
• 목욕장내 미끄러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나요?	☐	☐	☐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한함

출처: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건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안전·위생 실내가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실내가 잘보이도록 시창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안전·위생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이용질서 유지 여부가 관리,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온도계와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4. 23.>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아. 문화강좌실 등

건축 창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 초과 또는 실내 바닥면에서 120㎝ 이하인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다. 천장에 설치되는 창문의 유리는 파손 시 파편 비산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된 창문 및 커튼월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된 창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례1 - 안전난간대 설치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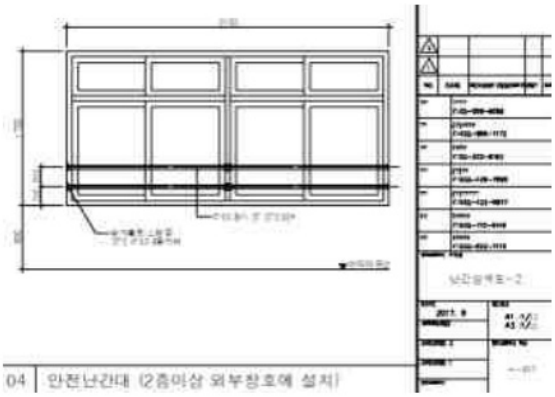

〈사례2 - 안전난간 설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시설물 돌출부 및 바닥 단차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내 돌출부 모서리의 완충을 위한 벽체, 기둥 등 충격패드 설치 및 바닥 단차이 인지성 확보를 위한 마감색상 구분, 시인성 스티커 부착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3조(건축물) ① 교육시설의 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칠판,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할 것
3.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상부층의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할 것

② 교육시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관 출입문, 교실문 등 출입구는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과 재난 발생 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조작이 쉽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충분히 확보할 것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 축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3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시 험 성 적 서

OOOOOOOO연구원장 (인)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건 축 각 실별 용도에 적합한 바닥 재질을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질 설치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소 방 소화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항목 구성 및 근거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SEOUL EDUCATIONAL FACILITIES MANAGEMENT OFFICE